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종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05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김중양의원 대표발의(제220040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특례(안 제7조의8 신설)	3

I. 김종양의원 대표발의(제220040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종양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4. 6. 12.

다. 회 부 일 : 2024. 6.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정부는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원전, 반도체,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전략을 발표했음.

이러한 첨단산업은 그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원천기술의 선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경쟁에서 밀려날 우려가 큼.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첨단산업 기술개발의 거점이 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등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동안 지방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등을 적극 완화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들 후보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여전히 이뤄지

지 않은 상황이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다른 국가산업단지에 우선하여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지정을 위한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도록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8 신설).

3. 검토의견

가.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특례(안 제7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7조의8(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반도체, 미래자동차, 우주, 원자력발전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첨단산업단지”라 한다)를 다른 국가산업단지에 우선하여 신속히 지정하여야 한다.</u> <u>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속한 지정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u>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은 반도체, 미래자동차, 우주, 원자력발전산업 등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다른 국가산업단지에 우선하여 신속히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할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려는 것임.

국가산업단지¹⁾는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의 육성, 낙후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 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역이나 둘 이상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일정 규모 미만의 국가산업단지는 지정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심의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됨.²⁾

정부는 2023년 3월 15일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함께 그 실행방안으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지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임.

그런데, 2024년 7월 기준 3개 후보지(용인·고흥·울진)³⁾를 제외한 후보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1. 신규개발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으로 신규개발하는 산업단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1천만제곱미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다른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 1) 및 2)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出資)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나.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500만제곱미터

3) 용인 후보지는 2023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2024년 4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농지·산지전용 등 인허가 및 환경·재해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임. 고흥·울진 후보지는 2024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임.

지는 사업타당성조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등 사전단계가 진행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각종 영향평가·인허가 협의 등 후속 절차
를 마치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
이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첨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속
히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이행 노력과 협조 의무를 명시하여, 급변
하는 산업 여건에서 첨단산업의 국제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역의 균형발
전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국가첨단전략산업⁴⁾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⁵⁾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⁶⁾ 국토교통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
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
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
을 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별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 관련)

- ① 반도체
- ② 이차전지
- ③ 디스플레이
- ④ 바이오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이하 “전략산업등”이라 한다) 관련 교
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

부장관이 동 특화단지의 지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대상 지역에 국가산업단지의 지정⁷⁾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바,⁸⁾ 현행법 제도와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및 범정부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산업간 융·복합에 따라 신산업이 빠르게 등장하는 여건을 고려할 때 안 제7조의8을 신설하는 대신 국가산업단지 일반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이 법과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조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할 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6조⁹⁾에 추

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6) 국가산업단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비교는 [참고] 참조.

7) 일례로, 용인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안동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됨.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574

있다.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 공모를 통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모할 수 있다.
-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5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공모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6항 단서에 따라 공모를 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⑧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 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국가산업단지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비교

자료: 국토교통부

구 분	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통상자원부)
목 적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등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 지	제한없음	전략산업 기업 등이 집단화되거나 집단지화 예정인 지역
시행자	공공 또는 민간 (주로 LH)	조성 중인 산단에 지정된 경우, 산단개발 시행자
절 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공공시행자인 경우)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협의 ↓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 국가산업단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 보상 후 착공	특화단지 육성계획 수립 후 특화단지 신청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국무총리 주재) ↓ 특화단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발 지원 (H/W)	· 기반시설 국비지원 (진입도로, 용수, 폐수 등) · 부담금 4종 감면(개발부담금, 농지보전, 대체산림조성, 대체초지조성) · 시행자 취득세, 재산세 감면	· 인허가 신속처리 · 예타면제 조항 ·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 부담금 5종 감면(개발부담금, 농지보전, 대체산림조성, 대체초지조성, 광역교통시설)
기업 지원 (S/W)	· 법인세 감면(수도권 이전기업) · 산단 입주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 전략기술 보유자 R&D,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 R&D, 인력양성, 실증 등 지원 ※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지원